

결 정

2018 - 2020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임 채 청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3.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주 문

東亞日報 2018년 1월 1일자 A26면 「재물복을 여는 신비한 목걸이 금운(金運) 개운(開運)/소원성취 금운을 부르는 대흑천상」 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1월 19일자 17면 「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 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월 27일자 25면 「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東亞日報, 한국일보, 중앙일보의 위 적시 광고들은 ‘대흑천’이라는 상징물로 장식한 목걸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대흑천’은 좋은 기운과 재물 복을 불러 들어서 사람의 운명에 재물 복을 차고 넘치게 해주고, 좋은 운명을 끌어들이고 액운을 막아준다』고 주장했다. 광고는 또 대흑천을 선물 받고 힘든 상황을 극복한 50대의 체험사례를 실었다.

그러나 위 광고들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피하는 것은 흑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위원	정승호	정승호
	장명국	장명국
	이동현	이동현
	장인철	장인철
	김규식	김규식
	강희	강희
	하윤수	하윤수
	김영모	김영모
	박현갑	박현갑
	박미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